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2.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림청	작 성 자	이름	유상아
	담당부서 (과)	목재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임상섭		연락처	042-481-8875
	과장	이종수		이메일	tkddk1221@mail.g o.kr

정책책임자직위

임상섭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목재 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2.규제조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및 별표1			
	3.위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8.1.~'19.9.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목재 교육전문가 국가자격의 신설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 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 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의 지정요건을 마련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7.규제내용	목재 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마련 - 목재 교육 전문과정 운영, 시설요건, 인력요건 등			
	8.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	목재 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목재 교육에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양질의 목재 교육 확산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11.영 향 평 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정성평가		해당없음	
기타	12.일 몰 설 정 여부	미설정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① 법 제

10조의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 ⑥ 생략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0조의3제1항 관련)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목재 분야 대학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목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다.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목재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것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과정	교과목	세부교과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76	82	94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입문	정책과 제도	2	2	
		목재와 문화	2	2	
		산림과 목재	2	2	
	목재교육전문가 일반	목재교육 전문가론	2	2	
		목재교육 경영론	3	3	
	목재과학	목재특성	14	10	4
		목재가공	8	8	
		목재이용	6	6	
	계		39	35	4
목재교육실무	제도의 이해	제도 기초	5	3	2
		투시도법	5	2	3
		도면의 표시	6	2	4
		재단도면계획	2	1	1
	목재가공 실무	측정 및 표시공구	2	1	1
		수공구	9	3	6
		전동공구	9	3	6
		목공기계	4	2	2
		마감기법	6	2	4
	목재가공 실습	목재가공실습 I	12	2	10
		목재가공실습 II	12	2	10
		종합실습	12	2	10
	목재가공 안전	작업안전	2	2	
		실습실 안전	2	2	
	계		88	29	59
목재교육방법론	교육과정	목재교육정의	2	2	
		목재교육과정설계	4	1	3
		교재개발	4	2	2
	교수학습	교육철학	2		2
		교수학습모형	2		2
		실기교육방법론	3		3
		직업 및 진로지도	3		3
		교수설계의 이해	2	2	
	수업설계	수업매체활용	3	1	2
		수업지도안 작성	8	1	7
		실습장구성	1	1	
		사례분석	2	1	1
		평가관	1	1	
	평가	평가의 절차와 종류	2	1	1
		사례분석	2	1	1
		계	41	14	27
안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및	8	4	4

현행	개정안						
	<table><tr><td></td><td></td><td>심폐소생술 등</td><td></td><td></td><td></td></tr></table>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목재교육 전문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 목재 관련 민간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부 교과목을 면제하며, 자격 및 학위의 범위,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일 것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실당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2) 실습장: 강의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공간 ※ 다만, 강의실을 실습장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위원의 현장 심사를 통해 강의환경을 검증받아야 한다. 3) 사무실: 사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 4) 교재·교구: 목재교육 전문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을 구비 5)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 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다.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에는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육에 적합한 인력을 갖춘 기관일 것 가.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할 역량을 갖춘 기관일 것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나.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참가자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관리 등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심폐소생술 등			
		심폐소생술 등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친환경, DIY 가구, 인생 이모작 등 사회·문화적 트렌드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목재, 목공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목공자격증 발급현황(누적) : ('15) 7,533 → ('16) 8,783 → ('17) 10,360명
- 목재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목재 교육 관련 민간 자격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및 목재교육 확산이 어려움
 - '18년 기준으로 민간에 목재 교육 관련 75개의 자격증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
 - * 목재 교육 관련 자격증 수 : ('15) 35 → ('16) 55 → ('17) 67 → ('18) 75
 - * 2017년 기준 연간 20건 이상 자격증 발급한 민간 기관은 6곳에 불과
 - 일부 민간자격은 10여 시간의 교육 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 사이의 취득 난이도 편차가 심함
 - 또한 목재는 소재 및 가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나 표준 교육 커리큘럼이 없어 안전 교육 없이도 자격증 취득 가능
 - *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18년, 목재문화진흥회) 결과 60.7%의 목공교육교사가 수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험 있다고 답변함
 - 충분히 교육받거나 검증되지 못한 인력이 목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목재 교육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된 국가자격으로 목재교육전문가제도를 운영함이 필요
 - 검증된 기관에서 표준화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출·관리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사항 마련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만족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역량있는 기관만이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유도하고,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인정

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제10조의3제1항 관련)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목재 분야 대학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목재교육을 위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목재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할 것
 -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과정	교과목	세부교과목	교육시간		
			합계	강의	실습
			176	82	94
목재교육개론	목재교육입문	정책과 제도	2	2	
		목재와 문화	2	2	
		산림과 목재	2	2	
	목재교육전문가 일반	목재교육 전문가론	2	2	
		목재교육 경영론	3	3	
	목재과학	목재특성	14	10	4
		목재가공	8	8	
		목재이용	6	6	
	계		39	35	4
목재교육실무	제도의 이해	제도 기초	5	3	2
		투시도법	5	2	3
		도면의 표시	6	2	4
		재단도면계획	2	1	1
	목재가공 실무	측정 및 표시공구	2	1	1
		수공구	9	3	6
		전동공구	9	3	6
		목공기법	4	2	2
		마감기법	6	2	4
	목재가공 실습	목재가공실습 I	12	2	10
		목재가공실습 II	12	2	10
		종합실습	12	2	10
	목재가공 안전	작업안전	2	2	
		실습실 안전	2	2	
	계		88	29	59
목재교육방법론	교육과정	목재교육정의	2	2	
		목재교육과정설계	4	1	3
		교재개발	4	2	2
	교수학습	교육철학	2		2
		교수학습모형	2		2
		실기교육방법론	3		3
		직업 및 진로지도	3		3
	수업설계	교수설계의 이해	2	2	
		수업매체활용	3	1	2
		수업지도안 작성	8	1	7
		실습장구성	1	1	
		사례분석	2	1	1
	평가	평가관	1	1	
		평가의 절차와 종류	2	1	1
		사례분석	2	1	1
	계		41	14	27

		<table><tr><td>안전</td><td>응급처치교육</td><td>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td><td>8</td><td>4</td><td>4</td></tr></table> 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목재교육 전문과정에 추가할 수 있다. 다. 목재 관련 민간 자격 또는 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일부 교과목을 면제하며, 자격 및 학위의 범위, 면제 기준 등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기관일 것 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음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실당 전용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 하나 이상 2) 실습장: 강의실과 분리된 공간으로 실습을 위한 장비가 갖추어진 공간 ※ 다만, 강의실을 실습장으로 활용할 경우 전문위원의 현장 심사를 통해 강의환경을 검증받아야 한다. 3) 사무실: 사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되, 강의실 등 다른 목적의 시설과 분리 4) 교재·교구: 목재교육 전문과정과 관련된 도서 및 교육에 필요한 교구 등을 구비 5) 컴퓨터, 복사기, 팩스 등의 사무용 기기 구비 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나.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 시설,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시설을 둘 수 있다. 다.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에는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안전시설 및 소방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이 공유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목재교육 전문과정 교육에 적합한 인력을 갖춘 기관일 것 가. 각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교육하여야 한다. 나.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는 전담 관리자를 1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5. 목재교육 전문과정 평가할 역량을 갖춘 기관일 것 가. 목재교육 전문과정의 평가는 각 과정별로 정해진 교육시간 이상의 교육을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하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2회에 한정하여 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나. 목재교육 전문과정은 참가자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다. 목재교육 전문과정 이수자의 자체 활용 및 이력관리 등 관리 방안이 마련 되어 있어야 한다. 라.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8	4	4
안전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8	4	4			
규제대안2	대안명	별도의 요건 없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신청하는 기관을 모두 양성기관으로 인정						

	내용	시설, 인력 등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하는 기관 모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	----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고, 역량이 있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우수한 목재교육전문가 육성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별도로 구비해야하는 인력, 시설 요건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
규제대안2	별도의 요건 없이 신청만으로도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에 행정처리가 간편함. 또한 지역별 양성기관 확보 용이	검증되지 않은 기관이 목재교육전문가를 육성하게 되면서 배출되는 인력의 역량에 격차가 발생할 우려.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목재문화진흥회	"목재교육 전문과정"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전문과정 구성에 의견 제시	법령 초안에 반영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공교육협회		
한국인테리어기술교육학원	의견 없음	해당 없음
(사)한국과학커뮤니케이터협회		
한국생활아트공예인협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목재교육전문가의 제도 도입 취지는 민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격증과의 차별성을 두고, 전문성 있는 목재 교육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
 - 따라서 전문성 있는 국가 자격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은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임
- 또한 목재교육의 특성상 실습 과정이 포함되어있으며,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
 -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고, 수강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

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양성기관에 대한 지정요건 규정이 필요함

3. 규제목표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 사항을 정함으로서 '20.1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출할 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별하기 위해 자격요건, 인력요건, 교육과정 요건, 시설요건 등을 규정하고 양질의 전문인력 육성을 도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양성기관 지정 자격은 교육기관, 민법 및 상법상 법인, 비영리단체 및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관 등을 모두 포함하는 등 최대한 자격 요건을 개방하였으며, 인력, 시설 및 교육 요건 역시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규정함
- 양성기관이 목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도록 함으로서 수강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규제의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성평가	해당없음	미설정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창업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규제 피대상자 중 중소기업을 특정할 수 없음
④ 대상 업종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 : 목재교육업, 목공교육업 등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 규제대상 업체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 자에 대한 규제로, 규제 대상 중 중소기업을 특정할 수 없음 ② 유사사례 분석 ◦ 산림청 소관 국가자격인 산림교육전문가,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지도사 등 각종 국가자격에서 피규제자의 인력이나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양성기관 지정을 위한 기준에 차등을 두지 않음 ③ 차등화 대상 결정 ◦ 해당 규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기준을 지정한 것으로 기관의 재정 및 인력의 규모에 따라 이를 차등화하는 것은 양성되는 전문 인력의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곤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로, 해당 규제 없이는 제도 운영이 불가능한 바 지속적으로 규제를 유지할 필요 존재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특정 기관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 곤란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한정적으로 나열된 인허가 유형이 아니기에 유연한 분류체계를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피규제자가 만족해야하는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곤란
사후 평가관리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우선적으로 적용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교육의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에 적용 곤란
규제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

샌드박스		제가 아님. 또한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성보다 크기에 적용 곤란
------	--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8(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법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나무의사 등의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 지정요건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가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해당 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11에 따른 한국나무의사협회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4.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5.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6.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7. 「민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수목진료 관련 비영리법인
8.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산림보호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③ ~ ⑦ 생략

■ 산림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 <신설 2018. 6. 26.>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12조의8제1항 관련)

구분	세부기준
시설 및 장비	1.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을 위한 상시 활용이 가능한 강의실(교육인원 1명당 1㎡이상, 총전용면적 49.5㎡ 이상), 실습장 등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2. 해부 및 광학현미경 2식, 군배양시설(멸균기, 항온항습기) 1식, 엽록소 측정기 1식, 형성층 전기 저항계 1식 3. 사무실 4. 화장실, 급수시설,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인력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임 교수요원 1명 이상

	가.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한 사람 다. 나무의사 자격,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강의 또는 실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관리하는 전임 관리자 1명 이상
교육과정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에 적합할 것
<비고> 1. 교육시설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강당, 회의실, 자료실, 도서실, 상담실, 컴퓨터실, 방송·통신시설, 보건위생시설 및 설비시설을 둘 수 있다. 2. 수목진료 전문인력 양성 교과과정은 전임 교수요원이 교육해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해당 규제는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8 및 산림교육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등을 준용하여, 전문가 양성기관으로의 지위를 인정받기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교육, 인력, 시설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목재교육전문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9. 1. 8.)됨
- 민간 자격 발급 주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회의 총 4회 개최 (4.5, 4.19, 5.3, 5.16)하여 하위법령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공교육협회, 국립산림과학원, (주)한국목공,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등
-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7.4 ~ 7.15)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첫 년도인 '20년 기준 양성기관 5개 이상 지정, 연간 100명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 목표 설정, 추진현황 지속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목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목재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은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역량이 증명된 기관만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목재교육을 확산하는 측면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제임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19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인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인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 대상 기관
활동제목	시설, 설비 비용
비용항목	설비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② 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목재 교육 대상자
활동제목	안전한 목재교육 시행으로 안전사고 방지
편익항목	안전사고 발생률 저감 및 이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분석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중 안전 교육을 포함함으로써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고 이에 수반되는 비용 절감
근거설명	- 산림청 연구용역 ‘2018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목공수업(체험)중 안전사고 발생 경험은 60.7%이며, 그 중 대부분이 밴드를 붙일 정도의 가벼운 상처(90.9%)이나, 병원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정도의 사고 역시 20.8%에 달함 - 기존 민간 자격의 경우,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목재 가공 안전 교육 시간이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있지 않아 안전 사고가 다수 발생 - 해당 규제의 신설로 안전한 목재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어 안전사고의 발생률을 낮추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요건		
	2.규제조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3.위임법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제3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19.8.1.~’19.9.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목재교육전문가 국가자격의 신설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을 마련하여 양성기관의 사후관리를 가능케 하고 결과적으로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		
	7.규제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9.규제목표	양성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르 도모하고, 제도의 신뢰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정성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4(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u> <u>의 지정 취소) 법 제10조의2제2항제</u> <u>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u> <u>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u> <u>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u> <u>다.</u> <u>1.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u> <u>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u> <u>받고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u> <u>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u> <u>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을 운</u> <u>영하지 아니하는 경우</u> <u>2.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u> <u>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u> <u>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u> <u>영하는 경우</u>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친환경, DIY 가구, 인생 이모작 등 사회·문화적 트렌드 변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목재, 목공예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목공자격증 발급현황(누적) : ('15) 7,533 → ('16) 8,783 → ('17) 10,360명
- 목재 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목재 교육 관련 민간 자격이 무분별하게 생겨나 양질의 전문 인력 양성 및 목재교육 확산이 어려움
 - '18년 기준으로 민간에 목재 교육 관련 75개의 자격증이 존재하나 대부분의 자격증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
 - * 목재 교육 관련 자격증 수 : ('15) 35 → ('16) 55 → ('17) 67 → ('18) 75
 - * 2017년 기준 연간 20건 이상 자격증 발급한 민간 기관은 6곳에 불과
 - 일부 민간자격은 10여 시간의 교육 이수만으로도 자격증을 부여하는 등 민간자격 사이의 취득 난이도 편차가 심함
 - 또한 목재는 소재 및 가공의 특수성으로 인해 철저한 안전 교육이 필요하나 표준 교육 커리큘럼이 없어 안전 교육 없이도 자격증 취득 가능
 - * 목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18년, 목재문화진흥회) 결과 60.7%의 목공 교육교사가 수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험 있다고 답변함
 - 충분히 교육받거나 검증되지 못한 인력이 목재 교육을 진행할 경우 교육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
- 따라서 체계적인 전문 인력 양성과 양질의 목재 교육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인된 국가자격으로 목재교육전문가제도를 운영함이 필요
 - 검증된 기관에서 표준화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양질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배출·관리
-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사항 마련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대상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위반행위 등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 내용)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대상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처분 내릴 수 있는 위반행위를 규정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 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운영하거나 지정받은 교육과정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 (선택 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 마련
 -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양성기관의 현황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만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받은 후 1년 이상 전문 과정 혹은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전문과정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들의 정책적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일이며 결과적으로 산림청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음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요건에서는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만일 양성기관이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양성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에 부적합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목재문화진흥회	의견 없음	해당 없음
한국DIY가구공방협회		

3. 규제목표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반 사항을 정함으로서 '20.1부터 시행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 도모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양질의 목재교육 전문 인력 양성 활성화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양성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제도의 실효성 있는 시행을 통해 양질의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을 목적으로 함
- 오랜 기간 동안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양성기관을 운영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관에 대한 규제는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 또한, 지정받은 교육시설이 아닌 곳에서 전문 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양성기관이 아닌 곳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는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일몰설정 여부	우선허용· 사후규제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정성평가	해당없음	미설정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운영 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 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 중 중소기업을 특정할 수 없음
④ 대상 업종	목재교육업, 목공교육업 등
⑤ 예비분석내용	① 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 규제대상 업체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인 자에 대한 규제로, 규제 대상 중 중소기업을 특정할 수 없음 ② 유사사례 분석 • 산림청 소관 국가자격인 산림교육전문가, 환경부 소관 환경교육지도사 등 각종 국가자격에서 피규제자의 인력이나 재정규모를 기준으로 기관의 관리에 차등을 두지 않음 ③ 차등화 대상 결정 • 목재교육전문가 운영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을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기관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규제 특성상 양성기관의 지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함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곤란

○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미설정)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 기준은 양성기관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규제로 제도 운영에 필수적임. 따라서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할 시 피규제자에게 오히려 침익적인 규제가 될 수 있기에 포괄적 개념 정의 곤란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양성기관 지정취소의 기준을 유연한 분류체계로 제시할시 오히려 피규제자에게 침익적인 규제가 될 수 있기에 적용 곤란
네거티브 리스트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해당 규제는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병렬적으로 제시한 것임. 따라서 네거티브 리스트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명시되어있지 않는 모든 행위는 모두 처분 대상이 되기에 오히려 규제의 강도가 높아지는바 적용 곤란
사후 평가관리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해당 규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사후 평가관리를 적용하기 곤란
규제 샌드박스		해당 규제는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님. 또한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여 양성기관의 지속적인 관리를 이행하는 것이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를 완화해줄 필요성보다 크기에 적용 곤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10(마리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 ③ 생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생략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및 시설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하는 바,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목재교육 전문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교육비 등 각종 수입을 올릴 수 있음
- 따라서 상당한 노력을 들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문과정을 운영하지 않을 유인이 적다고 판단되는 바,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 가능성은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기관 혹은 전문과정을 지정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목재교육전문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을 선정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예정

○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당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목재의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19. 1. 8.)됨
- 민간 자격 발급 주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자문회의 총 4회 개최(4.5, 4.19, 5.3, 5.16)하여 하위법령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 * 한국DIY가구공방협회, 한국목공교육협회, 국립산림과학원, (주)한국목공, 전국창의목공교사모임 등
- 목재이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타 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7.4 ~ 7.15)

2. 향후 평가계획

- 시행 첫 년도인 '20년 기준 양성기관 5개 이상 지정, 연간 100명 이상 목재교육전문가 양성 목표 설정, 추진현황 지속 모니터링 실시

3. 종합결론

- 목재교육전문가 제도 도입을 통해 체계적인 목재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양질의 목재교육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취소요건은 양성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가능케 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제도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임

- 또한, 해당 규제를 통해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품질 관리가 가능해져 우수한 인력 배출 및 양질의 교육 확산에 기여하므로 규제 대비 사회적 편익이 큰 것으로 판단됨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